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병윤 의원 외 38명

나. 의안번호 : 제1711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4. 3.

라. 회부일자 : 2024. 4. 8.

2. 제안사유

○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

○ 이에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중교통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나. 조문 체계와 형식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함 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　　간 : 2024. 4. 12. ~ 2024. 4. 16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[1)]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--

1) 교통정책과-7103호(2024.4.18.) “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-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수준, 적자규모,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, 물가상승률,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(「대중교통 기본조례」 제14조 등),

- 대중교통 요금 조정이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요금 조정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이행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(동 조례 제10조)

- 시민 의견수렴 내실화를 위해 시민 의견수렴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도록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취지로써 원안 동의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요금 조정 시 공청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한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불합리한 조문 체계를 수정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▌요금조정 위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 관련(안 제10조)

○ 안 제10조는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임

○ 서울시는 최근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동 조례[2)]

---

2)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 제10조(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)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**의견청취 전에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**해야 한다.

의 취지와 다르게 행정절차를 형식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

○ 따라서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 시민 의견수렴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조성 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담됨

※ 최근 대중교통 요금 조정 추진일정

○ 시의회 의견청취(안) 제출 : '23.2.9.
○ 공청회 개최 : '23.2.10.
○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(안) 심사 : '23.3.7.
○ 요금 조정 : '23.8.12.(버스 요금), '23.10.7.(지하철 요금)

▌조례 체계 수정 관련(안 제17조)

○ 안 제17조는 법령 체제 중 본칙의 조문형식에 맞게 제1항을 조문의 본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"조"를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 "조"를 "항"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17조는 "조"를 세분할 필요가 없음에도 항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형식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